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935-9067, 02-935-906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2.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6.02.20.(금)	'26.03.03.(화)	'26.03.04.(수)	'26.03.05.(목)	'26.03.06.(금)	'26.03.12.(목)	'26.03.13.(금)~'26.03.18.(수) 10:00~17:00 (4일간, 주말제외)	'26.03.23.(월)~'26.03.25.(수)

■ 분양사무실 관람 안내사항

- 분양사무실 관람은 2026.03.02.(월) ~ 2026.03.06.(금) 5일간 10:00 부터 17:00 까지 운영합니다.

분양사무실 관람은 분양사무실(☎02-935-9067, 02-935-9068)에서 안내받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등으로 분양사무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방문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분양사무실 방문이 불가합니다.

■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분양사무실 상담전화(☎02-935-9067, 02-935-9068)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 사전관리 및 청약 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호수를 공개한 후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호수를 배정합니다.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rrington495.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예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02.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6.03.03.(화)	'26.03.04.(수)	'26.03.05.(목)	'26.03.06.(금)	'26.03.12.(목)	'26.03.13.(금)~'26.03.18.(수) 10:00~17:00 (4일간, 주말제외)	'26.03.23.(월)~'26.03.25.(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분양사무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95, 1층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2025.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아파트로서 상업지역 내 토지면적 15㎡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대상이나, 본 분양 주택은 토지면적 15㎡에 미달되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6.03.12.)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관계법령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2025.10.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건축사업과-2057호(2026.02.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95 (상계동 690)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4층~지상 23층. 1개동 총 299세대(공공임대 26세대, SH선매입 62세대, 민간임대 150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61세대
[특별공급 32세대(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6세대, 신혼부부 13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6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5.09.30.에 이미 사용승인(준공) 완료하여 계약체결 후 잔금 납입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028	01	059.7419B	59B	59.7419	30.9377	90.6796	35.0212	125.7008	11.8300	27	5	2	5	1	3	16	11	1
	02	059.6793C	59C	59.6793	31.1102	90.7895	34.9845	125.7740	11.8177	17	-	2	3	-	-	5	12	1
	03	059.6793D	59D	59.6793	31.4791	91.1584	34.9845	126.1429	11.8177	17	-	2	5	1	3	11	6	1
	합 계									61	5	6	13	2	6	32	29	3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7419B	059.6793C	059.6793D
약식표기	59B	59C	59D

-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계절창고,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면적 산출 시 소수점 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산출하여 소수점에서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실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9B	59C	59D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1
	장애인	1	-	-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근로자	1	-	-	1
소계		5	-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50%)	1	1	1	3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1	1	3
신혼부부 특별공급		5	3	5	13
생애최초 특별공급		3	-	3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1	2
합 계		16	5	11	3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정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 구분 (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입주 시
59B	27	9호, 10호	10층	1	322,000	483,000	805,000	80,500	724,500
			11층	2	324,000	486,000	810,000	81,000	729,000
			12층	2	326,000	489,000	815,000	81,500	733,500
			13층	2	328,000	492,000	820,000	82,000	738,000
			14층	2	330,000	495,000	825,000	82,500	742,500
			15층	2	332,000	498,000	830,000	83,000	747,000
			16층	2	334,000	501,000	835,000	83,500	751,500
			17층	2	336,000	504,000	840,000	84,000	756,000
			18층	2	338,000	507,000	845,000	84,500	760,500
			19층	2	340,000	510,000	850,000	85,000	765,000
			20층	2	342,000	513,000	855,000	85,500	769,500
			21층	2	344,000	516,000	860,000	86,000	774,000
			22층	2	346,000	519,000	865,000	86,500	778,500
			23층	2	348,000	522,000	870,000	87,000	783,000
59C	17	8호	7층	1	316,000	474,000	790,000	79,000	711,000
			8층	1	318,000	477,000	795,000	79,500	715,500
			9층	1	320,000	480,000	800,000	80,000	720,000
			10층	1	322,000	483,000	805,000	80,500	724,500
			11층	1	324,000	486,000	810,000	81,000	729,000
			12층	1	326,000	489,000	815,000	81,500	733,500
			13층	1	328,000	492,000	820,000	82,000	738,000
			14층	1	330,000	495,000	825,000	82,500	742,500
			15층	1	332,000	498,000	830,000	83,000	747,000
			16층	1	334,000	501,000	835,000	83,500	751,500
			17층	1	336,000	504,000	840,000	84,000	756,000
			18층	1	338,000	507,000	845,000	84,500	760,500
			19층	1	340,000	510,000	850,000	85,000	765,000
			20층	1	342,000	513,000	855,000	85,500	769,500
			21층	1	344,000	516,000	860,000	86,000	774,000
			22층	1	346,000	519,000	865,000	86,500	778,500
			23층	1	348,000	522,000	870,000	87,000	783,000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 구분 (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입주 시
59D	17	7호	7층	1	316,000	474,000	790,000	79,000	711,000
			8층	1	318,000	477,000	795,000	79,500	715,500
			9층	1	320,000	480,000	800,000	80,000	720,000
			10층	1	322,000	483,000	805,000	80,500	724,500
			11층	1	324,000	486,000	810,000	81,000	729,000
			12층	1	326,000	489,000	815,000	81,500	733,500
			13층	1	328,000	492,000	820,000	82,000	738,000
			14층	1	330,000	495,000	825,000	82,500	742,500
			15층	1	332,000	498,000	830,000	83,000	747,000
			16층	1	334,000	501,000	835,000	83,500	751,500
			17층	1	336,000	504,000	840,000	84,000	756,000
			18층	1	338,000	507,000	845,000	84,500	760,500
			19층	1	340,000	510,000	850,000	85,000	765,000
			20층	1	342,000	513,000	855,000	85,500	769,500
			21층	1	344,000	516,000	860,000	86,000	774,000
			22층	1	346,000	519,000	865,000	86,500	778,500
			23층	1	348,000	522,000	870,000	87,000	783,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주택은 발코니 확장 및 세대 내 가전 및 가구를 무상옵션으로 이미 준공되어 발코니 확장 미선택이 불가하고 설치된 가전과 가구의 대체 또는 제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치된 가전 및 가구의 대체 및 제거 등은 입주 후 본인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재되어 있으며, 1층 로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 세탁실, 회의실, 스카이라운지, 계절창고 등),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이며, 지상 2층과 3층은 노원구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계약 후 별도로 통지하는 입주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며, 연체금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내에서 무작위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 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3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해당시도(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기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와 기타지역 거주자가 재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 ② 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2명	10	
	세대구성(3)	5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3세대 이상	5	
	무주택기간(4)	20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10년 이상	5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2.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명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 분	금 액	내 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2.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비고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명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 분	금 액	내 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① 세대주일 것(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②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 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해당지역	기타지역		
신청대상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일시	'26.03.03.(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 ~ 17:3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10:00 ~ 14:00)	'26.03.04.(수) 09:00 ~ 17:30	'26.03.05.(목) 09:00 ~ 17:30	'26.03.06.(금) 09:00 ~ 17:30	'26.03.12.(목)
신청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방문접수)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분양사무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95, 1층)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방문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PC·모바일) 청약홈 개별조회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방문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방문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은행창구 접수 불가)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3.12.(목) ~ 2026.03.21.(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3.1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03.13.(금)~2026.03.18.(수) 10:00~17:00 (4일간, 주말제외)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분양사무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95, 1층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사무실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호수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당첨 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원본 서류만 인정함)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호와 미계약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호와 미계약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분양사무실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용 / 제출처 : 삼성물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단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기관 추천 특별 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		배점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실 비치 ※ 배점검산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기존주택처분 관련 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분양사무실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분양사무실 비치)
		○	기존주택처분 관련 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분양사무실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 구비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분양사무실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대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실 비치 ※ 가점검산용
		○	기존주택처분 관련 서약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 최초 특별 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분양사무실 비치)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통산하여 5개년도 납부 입증서류 (아래 생애최초 소득세 납부입증 구비서류 참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분양사무실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 구비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분양사무실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대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 미혼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실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삼성물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분양사무실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2.20.(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원본 서류만 인정함)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 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24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①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③ 등기소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①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① 번이없는경우,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무직인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분양사무실 비치 ② 세무서
-----	--	---------------------

-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2.20.(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원본 서류만 인정함)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증빙기간 중 출산휴가 및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의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소득세 납부입증 구비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와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결정세액이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세무서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산입증 구비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위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 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 주택외의 집합건물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발급방법: 이택스(서울) 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 위택스(서울 외)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 시가를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① 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이택스, 위택스 ④ 위택스 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토지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개별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 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④ 위택스

※ 상기 자산입증서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 중 소득기준(생애최초 160%, 신혼부부 맞벌이 160%, 외벌이 14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서류는 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예외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서약서	본인	· 분양사무실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용 / 제출처 : 삼성물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입증서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가점제 청약자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실 비치 ※ 가점검산용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점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실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삼성물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신분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분양사무실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0.)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장소
정당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6.03.23.(월) ~ 2026.03.25.(수), 10:00~17:00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분양사무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95, 1층)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예정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경쟁 미달시에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현장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계좌이체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함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10억원이하 15만원 · 수입인지 수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후 출력 ·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증서(100% 납입) 확인 후 1/2의 차액을 사업주체가 환불할 예정
	○		통장사본		· 수입인지 세액 환불용(계약자 명의 환불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발급용도: 주택공급계약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서류제출, 주택공급 계약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 아파트 공급대금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 증빙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실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발급용도: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의 경우 기입필요 : 발급기준(본인발급) / 발급용도(서류제출,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대리인 계약 시에는 본인 계약 시 필요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계약자,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분양사무실 비치)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26.03.23.~03.25.) 및 시간(10:00~17:00) 내 방문 및 계약금 전부를 입금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26.03.23.~03.25.) 및 시간(10:00~17:00) 내 방문하지 않거나 계약금 전부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분양사무실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기타 계약체결조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년, 수도권외 6 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60-910025-3765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은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상기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은 사업주체를 대리하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 공급계약상 공급금액을 수납하고 집행할 뿐 자금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사업주체의 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09호 홍길동 → 1009홍길동으로 기재)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 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 가목 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예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단지 여건 등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관련 안내사항

- 본 아파트는 2025.09.30. 준공이 완료되어 모든 세대 발코니 확장 및 가구, 가전 등이 설치된 상태로서 발코니 미확장 선택이 불가하며, 설치된 가전 및 가구도 대체 및 제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환경

구분		주요시설	비고
현관		수납장(신발장)	전세대
침실 거실 주방	가구	불박이장(옷장), 싱크대	전세대
	가전	에어컨	3대(LG)
		냉장고	1대(LG 875L)
		세탁기	1대(LG 17kg)
		쿡탑	3구(파세코)
		음식물 탈수기	전세대(파세코)
욕실, 화장실		수납장(욕실장)	전세대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단지 내부 환경

구분	주요시설	비고
주차장	총241대(자주식114대, 기계식127대) 공동주택 : 212대 비주거시설 : 29대	장애인주차 : 6대(포함) 나눔카 : 수요조사 반영 예정
재활용분리수거장	주거, 비주거 별도 설치	지하 1층
관리사무소	1개소(주출입구)	지상 1층
커뮤니티시설	운동시설, 카페(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지상 4층, 지상 23층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	상가 10개실	지상 1층
통합실외기실	근생(EHP), 공공업무시설(GHP)	지상 2층, PIT층 별도 공간
무인택배보관함	1개소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주거용 및 비주거용 총 8대	16인승(장애인 겸용)

■ 입주자전용 커뮤니티 시설 운영 계획 (총 299세대 : 모든 임대 + 분양)

- 실내공간, 실외공간 계획

시설명	전용면적	위치	운영목적	내용
계절창고	270.01㎡	지하2~지하3층	생활편의 공간	소형면적의 주거공간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계절용품(겨울 옷, 선풍기 등)의 수납을 보완해주는 공간(유료/입주자 선택)
무인택배함	주출입구 (관리사무소) 근처 배치	지상1층	생활편의 공간	택배 발송 및 수취의 어려움과 비대면 택배수요 증가를 고려한 무인택배함으로 편의성 제공
휘트니스센터	266.91㎡	지상4층	건강활동 지원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개인 헬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
G.X ROOM				
커뮤니티 카페			문화생활 및 업무 공간	입주자 휴게공간 및 회의 공간으로 제공
스마트 세탁실			생활편의 공간	세탁물의 건조 및 대형 침구류의 세탁, 건조를 위해 제공되는 공간 코인세탁기(LG/17kg) 5기, 코인건조기(LG/13.6kg) 5기 등
SKY LOUNGE	170.54㎡	지상23층	문화생활 공간	입주자 문화생활, 휴식공간, 업무공간 등을 위하여 LOUNGE, CLUB LOUNGE, SKY LOUNGE 3개 공간으로 구획하여 제공
실외 공간 오픈라운지	-		문화생활 공간	- 커뮤니티 마당, 옥상 정원 등

※ 해당 시설 운영 일정은 입주 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해당 시설은 입주자 관리비로 운영되며, 관리비(공용공간)는 전세대에 부과됩니다.

※ 해당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계약자 관리, 시설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설은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되며 입주자의 휴식 및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 해당시설 변경 필요 시 사업주체, 입주자대표(분양자, 임차인), 임대사업자 등을 포함한 협의체의 의결 등을 통해 향후 변경하여 결정하고,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희 주차장면을 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을 세대 당 관리비용에서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구 분		설치대수	설치비율(%)
총 계		241	120.57%(법정대비)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장애인용	6	법정 3% 이상 반영
	유자녀용	47	신혼부부 세대 30%
	생계형	13	
나머지 주차공간	나눔카	23(추후 협의후 확정)	지하4층 기계식 주차장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18	지하4층 기계식 주차장
	입주자 일반	105	입주자 우선 배정 - 분양, 임대(신혼부부) 세대당 1대 - 도시형생활주택(청년형) 세대당 0.25대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여유 주차 공간		
비주거 (상가 등)		29	공공업무시설 22대 / 근린생활시설 7대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1순위 (25% 이하)		2순위	그 외
대 상	나눔카	자치구 거주자 / 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주차요금	업체 협의 요금	자치구(관리공단) 협의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자치구에서 확보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수용가능 차종

구 분		승용 주차제원	SUV 주차제원
자동차 제원	전 장	5205 mm	5205 mm
	전 폭	2100 mm	2100 mm
	전 고	1850 mm	1850 mm
	중 량	2200 kg	2200 kg
제외차종			

※ 해당 단지는 일부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임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배차, 탭차, 이륜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조업주차 구획까지 출입가능 차량은 높이 2.7m, 그 외 주차는 높이 2.3m까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단지는 높이 2.3m 이상의 화물차, 택배차, 탭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및 세부 운영 계획

- 주차장 운영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추후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 이후에는, 사업주체, 입주자대표(분양자+임차인), 임대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공용관리비 안내

- 공용부 전기·수도·가스 등은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됩니다. ※ 세대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또한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익, 커뮤니티 시설 운영 수익 등에 따라 공용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일반 관리비와 별도 관리) 예정입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 적자 시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미적용 안내

- 본 아파트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준공완료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예정일 및 사전 점검 안내

- 입주예정일: 2026년 4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2025.09.30.에 이미 사용승인(준공) 완료하여 계약체결 후 잔금 납입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정부 정책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이미 사용승인(준공) 완료되어 계약 체결 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

■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36, 37, 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지하), 계절창고,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스카이라운지, 옥상정원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2.7m	2.3m	2.3m

■ 내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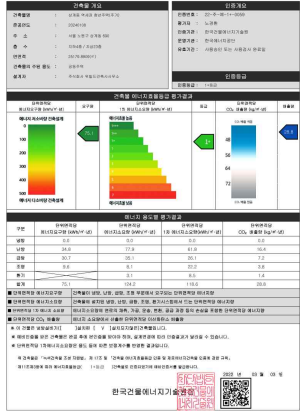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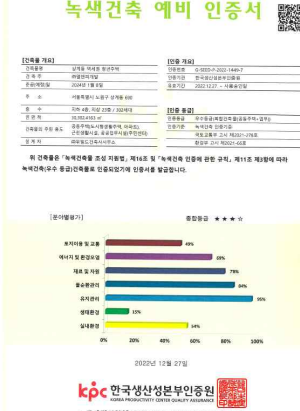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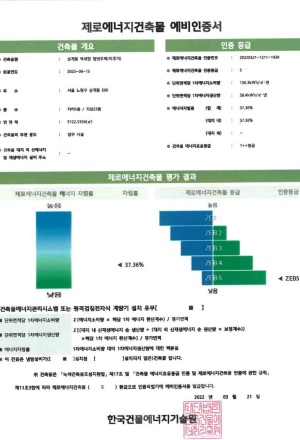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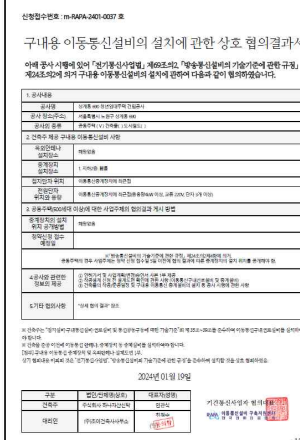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39g임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 정보통신
회사명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미래이엔지
감리금액	1,170,405,000	519,713,860	453,200,000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제17조(2021.1.2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한국건설에너지기술협회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한국건설에너지기술협회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한국건설에너지기술협회	상호합의번호: m-RAPA-2401-0007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자)	시공회사(시공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13, 2층 228호(현암동, 하우시티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27층 외(회현동1가, AK타워)
회사명	주식회사 엘애피개발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71-0079944	110111-0015762

12. 유의사항

■ 일반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계약 체결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관리비는 통합 산정되며,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예정임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자'('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함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시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입주전 별도 안내 예정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스카이라운지 등), 옥상조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단지내 (공용)보도는 준공이후 입주인이 관리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기질 측정 시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 진행 예정이며 측정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청약신청 또는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관리실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본 공급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건설사업에 따라 준공되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소셜믹스 되었음
마감재	•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 자재의 조달이 불가하여 미세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불박이장 등)의 시트제품 등 표면마감재는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자재의 경우 자재 특성상 표면 무늬와 색상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바닥 마루는 같은 제품이라 하여도 웅이가 있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으며, 타일의 경우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벽체에 부착된 타일은 시공법에 따라 골조벽체와 떠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 바람

분양사무실 /홍보물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하나 사용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해당제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 '매수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의 변경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단, 벽체공용면적 제외) 및 기타공용면적은 전단지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단지 내외부 도로(차도 및 보도)의 폭과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구조물(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시행사)'가 주관하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호별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증(녹색인증, 건물에너지 등) 및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결로방지설계기준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 적용될 수 있고, 적용 부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도로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이 불가함
단지	일반 사항	•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공공청사, 도로, 학교, 주거시설, 업무시설, 지하철 등]이 설치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되며, 평형별로 위치,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한 보관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예정임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재활용쓰레기 집하장은 지하 1 층에 설치되며, 재활용쓰레기 회수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배치	• 동 주변에는 상가, 드롭존, 옥외 출입구 등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상가, 승강기, 계단실, 옥상구조물,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실외기실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쓰레기 집하시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한전인입개폐기, 저수조, 정화조, 빗물저류조, 가스정압기, 실외기실, 주민공동시설 및 상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백연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차량출차주의등, 경보음 포함)와 인접한 버스차고지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출차주의 경보음,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난간턱 높이, 난간 형태 및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의 급배기구(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복리시설용, 제연용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부대복리시설, 공공보행통로, 상가 등의 주변에는 실외기, 공조기, 외조기, 급배기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침실측에 공용계단이 설치되어 공용계단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주동	• 코어별 승강기 대수는 인승, 속도가 다를 수 있음 (각 코어별 2대, 16인승) 코어별 승강기 인승, 대수, 속도, 탑승위치 등은 준공도서로 확인할 수 있음 • 세대 창에 입면분할창 등이 설치되어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으며 입주 및 이사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함 • 주동 저층부는 외부마감에 따라 공용홀 창호 크기가 기준층 대비 축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시공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지붕구조물은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옥상조경 등)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 피뢰침, 측격보호형 피뢰침(건물 외벽 보호), 경관조명,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우편함은 지상 1층에 2개소 설치되어 있음 • 옥상조경 및 시설물 계획(설치구간 및 형태, 마감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 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됨 • 공동주택 로비 계획(마감재, 디자인, 색상, 천장고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층 PIT 중 일부 또는 PIT 전체의 천장 및 바닥, 벽체 마감은 미 시공됨 • 옥상에는 통기배관이 설치되며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입면 돌출 장식물, 옥탑장식물, 동출입구 캐노피 차별화에 의해 일부 채광 및 조망 시 장애가 될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을 위해 조명, 입면변화, 돌출 구조물 및 커튼월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주변 세대의 야간 빛 간섭, 주간 채광 간섭, 햇빛 반사 및 우수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실 시공 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공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부대 복리 시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 및 기능, 구조, 성능 개선, 배관간섭 등으로 인해 평면 레이아웃, 입면, 단면, 천장고,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및 유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공사시 피트니스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 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열리는 창의 크기,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하 주차장	• 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일부는 PC 구조로 적용되었으며, 부재의 크기, 형태, 특성 등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대수 : 241 대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 •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공간 쌓기 또는 건식판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수 있음 • 지상 1 층에 무인택배함이 1 개소 설치됨 • 지하 1 층 주차장은 택배차량, 청소차량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차량동선의 유효높이는 2.7m 로 계획됨 • 지하주차장이 PC 로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은 별도 마감을 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의 PC 적용 부위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차대수에 전기차 충전공간은 급속 1대, 완속 5대가 포함되어 있음 • 준공 후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주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음
조경	• 단지에는 조경시설이 설치되며, 관리 여하에 따라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조경의 형태 및 모양 등은 시행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변경 결정 또는 현장 실시공 과정에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주민운동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시행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시공 여건 및 시행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대관인허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 · 구간 · 면적, 자재 등 대관 인허가과정 및 시행자의 의사결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옥상에 녹화 및 조경시설은 실시공 시 설치유무 및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주 출입구 /문주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의 반영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 및 색채, 줄눈, 외장재 재질, 커튼월룩프레임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상가 · 공공 업무 시설	• 상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점상가의 업종에 따라 음식 조리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및 공공업무시설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2층과 지상3층의 공공업무시설은 노원구청에 기부채납한 시설로서 단지 내 공공업무시설 방문객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되어 있으나, 구조심의 조건에 따라 대지경계선 중심으로 하나의 벽체를 공동 사용함. 구조 벽체의 두께로 인하여 줄어드는 실사용 면적은 아파트, 상가 각각 상이 함 • 상가 인근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차량출차주의등 경보음 포함)와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출차주의 경보음, 가로등, 야간 조명 등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위 세대 관련	일반 사항	• 동일한 타입이라도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우물천장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함 • 이웃세대 확장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음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함 • 단위세대 침실이 승강로에 면하는 경우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변경(골조, 조적, 건식벽체 등)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창 및 출입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 프레임 및 유리 색상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분양사무실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욕실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장, 등박스, 커튼박스 위치, 크기,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카달로그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 붙박이 가구 및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인테리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특히 주방가구(하부장, 아일랜드장 하부), 현관, 신발장, 샤워부스, 욕조, 위생기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단열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해당 세대 내부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기둥 일부가 돌출되고 마감에 상이할 수 있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침실 및 욕실문의 기본 도어록 사양은 키가 없는 타입임 • 가전의 대형화에 따라 신규 전자제품은 주방가구 및 다용도실 등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호수에 따라 신발장 구성 및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및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은 기본 제공됨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가구 측면이 가열대와 인접시 방열판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의 디테일, 수납공간 등은 사용성 개선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해 분양사무실과 상이하게 일부 시공될 수 있음 • 타입에 따라 현관 디딤판의 폭 및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부장 수납 공간 최대 확보를 위해 후드 좌우 여백 치수가 비대칭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평면 계획에 따라 주방가구 하부에는 배수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전 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	--

	전기 / 설비	•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의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에 설치된 조명 또는 외부마감(커튼월록, 확장창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욕실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되며 일부 최하층 세대 욕실은 현장여건에 따라 층상배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입주자가 관리해야할 개별 시설물로서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리비용이 발생함 • 욕실 배기는 배관 길이에 따라 가동소음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렌지후드의 위치에 따라 가동 시 소음, 진동이 침실로 전달될 수 있음 • 환기시스템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배관(욕실/주방배기/세대환기)이 노출될 수 있고, 단천장이 시공될 수 있음
--	---------------	---

■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홈페이지 : <https://www.harrington495.kr>

■ 분양사무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95, 1층

■ 분양문의 : 02-935-9067, 02-935-906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